탄 원 서

관저 이전 관련 별도 기소 사건 | 무죄 판단 요청 및 예비적 정상 참작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귀중
사건번호	2026고합569
피고인	김태영 (21그램 대표)
관련 공소사실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혐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보도 기준)
탄원 취지	주위적으로 무죄 판단 요청 / 예비적으로 책임에 상응하는 선처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에 올립니다.

저는 김태영 피고인의 관저 이전 관련 별도 사건 역시 각 범죄사실의 요건을 독립적으로 살펴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는 시민입니다. 국가계약의 공정성과 공직자 주변 금품 거래의 투명성, 조세질서 및 국회 증언의 진실성은 모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다른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이 모두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의 개별 고의와 행위에 대한 증명이 생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제24형사부의 공사비 관련 사기·감사원법 사건과 사건번호, 피고인 구성, 공소사실이 다릅니다. 저는 이 사건의 공소장과 전부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특정 사실이 밝혀졌다고 단정하지 않고, 공개된 기소 및 공판준비기일 보도에서 드러난 쟁점에 관하여 엄정한 심리를 청하는 취지로 글을 올립니다.

1. 혐의들이 함께 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하나의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공개된 기소 보도에서 김태영 피고인에게는 공직자 배우자에게 대한 금품 제공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29회에 걸친 약 32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알선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2025년 국회 국정감사 증언 관련 위증 혐의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관저 공사 계약과 명의대여, 직권남용 공모 여부도 별도로 다투어지는 쟁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 죄명과 적용 법조의 최종 범위는 공소장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금품을 제공했는지, 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지, 증언 당시 진실과 다른 사실임을 알았는지, 공무원의 직권남용 행위에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는 각각 다른 사실과 증거를 요구합니다. 한 혐의에 관한 의혹이나 인간관계의 가까움이 다른 혐의의 고의를 증명하는 자료처럼 무비판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세심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2. 의류·장신구와 샤넬 차액 지급 의혹은 실제 부담자와 정산 경위를 확인해 주십시오

특검은 2022년 5월 약 688만 원 상당의 의류·장신구와 같은 해 7월 약 324만 원의 샤넬 제품 교환 차액이 김건희 씨에게 제공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비 증액 요구와 물품 구입 시점이 가깝다는 사정을 의심의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며, 사후 정산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위법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구매 주문자·결제자·물품의 실제 수령자·최종 비용 부담자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결제 승인 내역, 물품 전달 기록, 사전 구매 요청 여부, 반환·정산의 기일과 내용, 관련 당사자 진술을 종합하여 '제공'의 실질과 시점을 특정해 주십시오. 2026년 3월 보도에는 물품 수령 직후 약 700만 원이 21그램 측에 입금된 내역도 언급되었습니다. 그 송금이 어떤 항목에 대응하며 누구의 자금인지, 688만 원 상당의 물품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은행 및 거래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입금 보도가 곧바로 금품 제공이 없었다는 증거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제공 금지와 직무관련성을 정확히 적용해 주십시오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 및 제5항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와 제공자에 관한 규율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 물품이 제공된 정확한 날짜, 당시 공직자 지위와 배우자 관계, 제공자·수령자, 적용되는 금품의 가액과 예외 여부, 공직자의 직무와 제공의 관련성을 실제 사실관계에 맞추어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관저 공사 수주 및 공사비 편의 제공을 둘러싼 직무관련성 주장은 중대한 쟁점입니다. 그러나 공사 관계자와 수령자 사이의 친분이나 물품의 가격만으로 피고인 본인의 제공행위, 인식, 상대방의 지위와 직무관련성이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고인 배우자나 법인의 실무자가 한 행위가 어느 근거에 따라 김태영 개인에게 귀속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4. 세금계산서 29건·32억 원은 건별 거래당사자와 공급 실체부터 심리해 주십시오

검사의 주장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실제 재화·용역의 거래 없이 29차례 약 32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발급·수취·알선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관저 공사에 원담종합건설과 21그램 등 여러 업체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건설업 면허 문제와 도급·하도급의 실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공급받는자를 맞추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실제 공사가 있었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실제 거래가 있더라도 그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다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그러므로 '공사를 했는가'에만 머물지 않고, 거래별 실제 공급 주체·상대방·대금 귀속·계약상 위험 부담·세금계산서상 기재가 일치했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한 업체가 설계와 현장관리를 맡고 다른 업체가 시공계약을 체결한 구조라면 계약서의 명칭 외에 실질적인 이행·대금정산과 세금계산서 발행 권한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거래당사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다면 그 이유와 피고인이 그 사정을 알고 관여했는지 또한 각각 밝혀져야 합니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영리 목적'과 합계액 기준을 별도로 판단해 주십시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관련 조세범 처벌법상 행위에 영리 목적이 있고, 범죄로 인정되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법정 금액에 이를 것을 요구합니다.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구간에는 법률상 가중처벌이 문제 되므로, 보도상 32억 원이라는 금액은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소된 모든 세금계산서를 당연히 범죄로 확정하거나 숫자가 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가중처벌 요건이 입증되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29건 각각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또는 제4항 전단의 죄가 성립하는지, 그 법적 평가와 공급가액 산정이 정확한지, 거래 전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영리 목적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황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한편 실제 공사나 조세 포탈액이 없다는 점만으로 모든 혐의를 부정할 수 없고, 형식상 발행에 관여했다고 해서 곧바로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판례상 범죄로 성립하는 세금계산서 금액의 산정방식도 함께 적용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6. 2025년 국정감사 증언은 선서와 문답 전체, 인식의 진실성을 함께 보아 주십시오

공개된 기소 보도에는 김태영 피고인이 2025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1그램을 소개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위증죄를 판단하려면 법률상 선서한 증인이었는지, 질문과 답변의 정확한 문언이 무엇이었는지, 당시 피고인이 답변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소개했는지'라는 질문은 누구를 소개의 주체로 보았는지, 업무상 전달받은 사실과 직접 알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구별했는지에 따라 답변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본 영상과 속기록, 전후 질문, 당시 연락·업무 문서를 대조하여 실제로 알고 있던 사실과 진술 사이의 차이를 살펴 주십시오. 단순한 기억 착오가 언제나 위증이 아닌 것처럼, 고의적인 부인을 단순한 기억 부족으로 포장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7. 계약 명의대여와 직권남용 공모 주장도 민간인의 구체적 가담행위로 판단해 주십시오

2026년 10월 19일 공판준비기일 보도에서는 피고인 측이 원담종합건설과 21그램 사이의 공사 역할을 설명하고, 직권남용 관련 공모관계를 다투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무원에 의한 직권 행사와 민간인의 협조 또는 공모는 법률상 판단해야 할 요건이 다르므로, 실제 지시·승인권을 누가 보유했는지, 명의 사용을 제안하거나 교섭한 사람이 누구인지, 피고인이 어떤 부당한 요구를 알면서 공동의 의사로 참여했는지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공범 성립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공무원이 한 위법한 결정의 결과로 공사를 수행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범의가 곧바로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 당시의 문서, 연락, 회의·현장 기록에 비추어 김태영 개인의 책임 범위를 한정해 주십시오.

8. 주위적으로 무죄를, 예비적으로 증명된 책임에 비례한 판단을 청합니다

제24형사부에서 다투는 사기·감사원법 사건과 이 사건은 사실관계가 일부 겹치더라도 서로 다른 범죄구성요건과 증거조사가 요구되는 독립 사건입니다. 다른 사건에서 제시된 의혹이나 피고인에 대한 인상이 이 사건의 죄명별 판단을 대신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의 엄격한 증명 원칙을 지켜, 합리적인 의심이 남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일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확정된 거래별 금액, 실제 제공·정산 내역, 고의의 정도, 각 행위에서의 역할, 범행 후의 객관적 경위와 책임의 정도를 구분하여 양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확인 없이 개인의 선행이나 생계사정을 만들어 선처를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에 따라 책임의 크기가 정확하게 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맺음말

존경하는 재판부, 복잡한 계약과 금품·세금계산서·증언 문제가 한 재판에 담겼을 때 중요한 것은 이를 한 덩어리의 의혹으로 보지 않고 하나하나 사실과 법률로 구분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료도 엄정하게 살펴주시되, 그 자료가 증명하지 못하는 고의나 행위까지 보태지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김태영 피고인에게 적용된 개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일부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증된 행위와 책임에 비례하는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합니다.

작성일:

탄원인 성명: _____ (서명 또는 날인)

주소: _____

생년월일: _____ 연락처: _____